

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
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3. 12. 17

1. 심 사 경 과

교육사회위원회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12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12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제 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

○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3. 12. 16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박 춘 용)

가. 폐 지 이 유

조례로 제정시행토록 되었던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
적용지역의 학군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
육감이 고시하도록 교육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4004호, 93.11.13)
이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○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8(후기고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)
제2항.

3. 검토 의견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본 폐지조례안은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천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 설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14004호, 1993. 11. 13)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고,

한편 당해 조례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폐지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, 폐지조례안의 제명을 ○○○조례폐지조례안으로 하고, 안 본문에 ○○○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
5. 토 론 요 지 : " 없 음 "

6. 심 사 결 과 : " 원 안 가 결 "

7. 소 수 의 건 요 지 : " 없 음 "

8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천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
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부.